

심 사 보 고 서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40
----------	-----

2023. 7. 13.(목)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3년 7월 4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7월 5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7월 13일

-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가. 제안사유

- 민족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출토유물의 보존처리 및 활용을 통해 민족문화를 전승·보급하고 문화유산의 총체적인 보존관리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설립된 출연기관인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청사의 행정재산에 대해 그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 대 상: 충청북도가 출연한 비영리 기관인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의 문화유산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기관: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재산위치: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4로 16
- 사용면적: 건물 2,912.11㎡, 토지 3,004㎡
- 감면내역: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 적용시기: 2023. 7. 24.~2028. 7. 23.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

□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현황

- 개 소 일: 2005. 11. 7.
- 설립목적
 -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 출토유물의 보존 및 그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전승·보급
 - 문화유산의 총체적인 보존관리체제 확립
- 주요사업
 - 문화재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 발간
 -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
 - 지역 문화유산 자료수집 및 보관 전시
 -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위임, 위탁사업
 -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교육활동
 -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인 원:

(단위:명)

구 분	계	원 장	연구직	사무직	비 고
정 원	30	1	24	5	
현 원	29	1	23	5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서정호)

- 이번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사용료의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사용료 감면)에 따라 충청북도 출연기관인 (재)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이 사용하고 있는 도유(행정)재산에 대해 그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흥덕구 송정동에 도유 행정재산 사용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했으며, 2017년까지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했으나, 2018년부터는 사용료 감면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았음.
- 이후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이 2023. 5. 15. 현재 위치의 건물로 신축 이전하였고, 새로운 도유 행정재산인 건물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으로 기존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과 같이 신축 건물인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행정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 됨
- 출연기관의 행정재산 사용료 부과와 출연기관 임대사용료 지원의 행정 과정을 제거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번 감면 동의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340
----------	-----

제출연월일 : 2023년 7월 4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민족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출토유물의 보존처리 및 활용을 통해 민족문화를 전승·보급하고 문화유산의 총체적인 보존관리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설립된 출연기관인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청사의 행정재산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 대 상: 충청북도가 출연한 비영리 기관인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문화유산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기관: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재산위치: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4로 16
- 사용면적: 건물 2,912.11㎡, 토지 3,004㎡
- 감면내역: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 적용시기: 2023. 7. 24. ~ 2028. 7. 23.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 제4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사용료 감면)

3. 참고사항

□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현황

○ 개 소 일 : 2005. 11. 7.

○ 설립목적

-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 출토유물의 보존 및 그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전승·보급
- 문화유산의 총체적 보존관리체제 확립

○ 주요사업

- 문화재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 발간
-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
- 지역 문화유산 자료수집 및 보관 전시
-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위임, 위탁사업
-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교육활동
-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인 원

(단위:명)

구 분	계	원 장	연구직	사무직	비 고
정 원	30	1	24	5	
현 원	29	1	23	5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관련 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2022. 11. 15.>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신설 2015. 7. 20.>
-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0.>
-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 7. 20., 2022. 4. 20.>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7. 20., 2016. 7. 12., 2020. 12. 22., 2022. 4. 20.>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와 인근지역 민족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보호·관리를 위한 충청북도 문화재 연구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법인격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명칭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1.4.1>

제3조(사무소) 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북도 관내에 둔다.

제4조(정관)①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4.1>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자산 및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자격·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구성 및 의결권 행사와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연구원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10.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연구원의 조직 및 규정제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수탁사업 등을 수행한다.<개정 2011.4.1>

1. 문화유산의 조사(지표조사, 발굴조사, 학술조사 등을 포함한다)와 연구 및 자료발간
2. 문화유산(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를 포함한다)의 보호·관리
3.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수장 전시
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그 밖에 본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6조(재산출연)연구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으로 한다.<개정 2011.4.1.>

1. 충청북도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현물
2.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및 기업체, 대학 등 기타 출연금

제7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연구원은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2개월전까지, 결산서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4.1>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개정 2011.4.1>

제8조(보고·검사 등)① 도지사는 연구원에 대한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1.4.1>

제9조(운영비 등 지원)도지사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도지사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1조(잔여재산의 귀속)연구원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에 귀속된다.<개정 2011.4.1>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도지사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열람 및 제공)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연구원의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를 열람토록 하거나 자료를 제공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의 위탁)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문화유산의 조사·보호·보존관리에 관련된 사업을 연구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비밀 준수 의무)연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다른 법령의 준용)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 4. 1, 2017. 11. 10>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